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3. 11. 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10월 30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99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위원회(2003.10.3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- 가. 폐지이유
 -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1998.11.25 조례 제412호로 제정하였으나 「제2의건국 운동지원단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15903호.1998.10.1) 및 「제2의건국 운동지원단 운영규정」(총리훈령 제386호.1999.7.5)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폐지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내용 :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.
- 다. 관련근거
 - 전국13310-29(2003.6.24)호와 관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창수)

근거법령인 「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」인 대통령령과 「제2의건국운영지원단 운영규정」인 총리훈령에 의해 1998.11.25 조례 제412호로 제정되었으나 2003년 6월 23일자로 근거법령의 폐지로 인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가하다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0. 22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1998.11.25 조례 제412호로 제정하였으나 「제2의건국 운동지원단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15903호.1998.10.1) 및 「제2의건국 운동지원단 운영규정」(총리훈령 제386호.1999.7.5)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건국13310-29(2003.6.24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03.9.5 ~ 2003.9.24) : 의견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. 11. 4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10월 30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99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3년 10월 31일) 상정 의결.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계정근)

- 가. 개정이유
 -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 복구공사의 경